

서울고등법원

제 8 행정부

판 결

사 건 2017누40817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조민지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20, 2층 (이화동, 삼영빌딩)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국가정보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현경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구합64678 판결

변 론 종 결 2017. 8. 11.

판 결 선 고 2017. 8. 25.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피고의 대지-2965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3. 30. 원고에게 한 피고의 대지-2965 자료제공요청서 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비공개 대상 정보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나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

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필곤		
	판사	신숙희		
	판사	이승철		

비공개 대상 정보

1. '자료제공요청서 표지' 하단의 담당자, 협조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2. 붙임 서류인 '조회대상 문서'의 내용[단, 전화번호란 중 원고의 전화번호는 제외하
되, 조회기간(시작)란 및 조회기간(종료)란 중 원고의 전화번호에 대한 것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포함된다]. 끝.

정본입니다.

2017. 8. 28.

서울고등법원

법원사무관 안경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 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